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지방의회의원들의 전문을 넓히고 정책발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무국외여행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여행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단순 관광성 국외여행 행태가 발생함으로써 이를 비판하는 시민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나.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상향하여 공무 국외활동의 사전심사를 엄격히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원 공무국외활동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지지를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외부위원을 포함한 7명의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나. 공무국외활동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단순 시찰·견학 등의 관광성 일정을 엄격히 배제토록 규정함 (안 제6조)
- 다. 국외활동계획서를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인천광역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9조)
- 라. 국외활동보고서를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즉시 인천광역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를 공동 활용하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 마.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 바.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회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05, 팩스 032-440-87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시장·교육감 및 타 기관의 요청에 의해 출장하는 경우
5. 상임·특별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6. 기타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활동의 경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대학교수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단, 공무국외활동 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중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신분인 위원의 경우 의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에는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⑥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⑦기타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국외활동의 필요성과 참가자의 적합성
2. 국외활동 국가와 방문기관의 타당성
3. 국외활동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4. 국외활동 목적 달성을 위한 사전준비의 충실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무국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활동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공무국외활동은 지역 현안에 대한 비교시찰 및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국외활동 이외의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의 관광성 일정은 배제되어야 한다.

②참가인원은 국외활동 목적에 맞는 최소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참가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있고 조직적인 국외활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외활동 국가와 방문기관은 국외활동 목적 수행에 필요한 곳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필요이상으로 국외활동 국가와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국외활동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⑤국외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국외활동 참가자의 임무숙지 등 국외활동 목적의 달성을 위한 준비정도를 심의하여야 한다.

⑥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국외활동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

③위원장은 국외활동 전 국외활동 전체일정과 예산이 포함된 계획서와 회의록을 인천광역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중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국외활동계획서 제출) ①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외활동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중 대표자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활동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국외활동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가인원이 2인 이상이었을 경우 국외활동 중 부여된 개별임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표자가 개별 보고서가 포함된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활동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인천광역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정보를 공동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 별지 제1호 서식 】

공무국외활동계획서

1. 국외활동 개요

국외활동 목적						
국외활동 동기 및 배경						
국외활동 기간	. . . ~ . . . (일간)					
국외활동 국가						
국외활동 참가자	소속위원회	성명	성별	연령	국외활동경비	
					금액(천원)	부담기관
	계					

2. 국외활동 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 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명시

3. 국외활동 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재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일비	식비	숙박비			

4. 국외활동 효과

공무국외활동보고서

(1) 겉표지 작성예시

○○○○제도관련 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인천광역시의회

(2) 속표지 작성예시

공무국외활동 개요

1. 국외활동국가 :
2. 국외활동목적 :
3. 국외활동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국외활동 참가자 인적사항
(2인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명	비고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예시〉

- I. (서론부분) : 국외활동의 배경 및 국외활동 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 IV. 수집자료(참고문헌) : 저자·성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 보고서의 맨첫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년월·소속의회를, 둘째장(속표지)에는 국외활동국가·국외활동목적·국외활동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국외활동 참가자 인적사항을, 셋째장에는 목차를 기재함.

3.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국외활동하게 될 국외활동 참가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 효과

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함.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국외활동 참가자가 단체로 국외활동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별첨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공무국외활동 경비는 한시적 경비이며, 공무국외활동 종료 시에는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4. 작성자 :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총무담당관 구남희

[별첨2]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